

1. 개정이유

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및 칠판, 게시판 등 교구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교구의 종류를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구의 종류(안 제2조의2, 별표3의2)

- 1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이 개정되며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을 명확히 함

나. 안전정보의 수집·관리 대상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관련 사항 포함(안 제44조)

- 1)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이 개정되며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명시되어 안전정보 수집·관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

다. 관련 서식 정비(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)

- 1)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삭제등 권고 관련 기재항목 보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교구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)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

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제21조제6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어린이제품안전정책의 수립·집행과 어린이제품사고”를 “어린이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(이하 “어린이제품 등”이라 한다) 안전정책의 수립·집행과 어린이제품 등 사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6조의2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9조”를 “법 제9조 및 법 제9조의2”로, “수거등”을 “수거등·삭제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어린이제품안전”을 “어린이제품 등 제품안전”으로 한다.

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의2]

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

1.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

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	적용 안전기준
가. 칠판 및 게시판	칠판 및 게시판 안전기준

어린이제품 수거등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 결과보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사업자	업체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보고자 (직급/성명)	전화번호/팩스번호
	주소	전자우편
제품정보	제품명	모델명
	상표명	인증번호 (신고확인번호)
	제조기간 (수입기간)	제조수량 (수입수량)
	판매기간	판매수량
	권고/명령날짜	
	권고/명령내용	
	☐ 안전인증대상 ☐ 안전확인대상 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	
수거등·삭제등의 내용과 실적		
수거등·삭제등의 조치 방법과 기간		
수거등·삭제등을 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		
재발방지 대책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, 같은 법 제10조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보고자

(서명 또는 인)

수거등 및 삭제등의 권고·명령 해제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사업자	업체명 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보고자 (직급/성명)	전화번호/팩스번호
	주소	전자우편
제품정보	문서번호	받은 날짜
	제품명	모델명
	상표명	인증번호 (신고확인번호)
	권고/명령날짜	
	권고/명령내용	
	☐ 안전인증대상 ☐ 안전확인대상 ☐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☐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	
제품의 결함 또는 위해성		
수거등 및 삭제등의 권고 또는 명령의 유형	☐ 수거 ☐ 파기 ☐ 수리 ☐ 교환 ☐ 환급 ☐ 개선조치 ☐ 제조·유통금지 ☐ 삭제	
해제 신청 사유		

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11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 및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대하여 해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십시오.
2. 신청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십시오.
3. 권고 등의 공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받은 날짜를 제품정보란에 적으십시오.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21조(정기검사의 방법·절차 등) ① ~ ⑤ (생략) ⑥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 ⑦ (생략) 제44조(안전정보의 수집·관리)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<u>어린이제품안전</u> 정책의 수립·집행과 어린이제	<u>제2조의2(교구의 종류 및 적용 안전기준)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.</u> <u>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</u> 제21조(정기검사의 방법·절차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</u>----- ----- -----. ⑦ (현행과 같음) 제44조(안전정보의 수집·관리) ----- ----- <u>어린이제품 및 직</u> <u>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(이하</u>

<u>품사고</u>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·관리하여야 한다.	“<u>어린이제품 등</u>”이라 한다) <u>안전정책의 수립·집행과 어린이제품 등 사고</u>----- -----.
1. <u>법 제6조제1항</u>에 따른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	1. <u>법 제6조제1항</u> 및 <u>법 제6조의2제1항</u>-----
2. <u>법 제9조</u>에 따른 <u>수거등</u>의 권고 내용 및 결과	2. <u>법 제9조</u> 및 <u>법 제9조의2</u>----- ----- <u>수거등·삭제등</u>-----
3.·4. (생략)	3.·4. (현행과 같음)
5. 그 밖에 <u>어린이제품안전</u>에 관한 정보	5. ----- <u>어린이제품 등 제품안전</u>---